

1. 개정이유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위반 시 적용되는 행정처분이 접경수역(러시아·북한)에서 나포·피랍된 경우와 서로 상이하여 형평성 및 재발방지를 제고하고, 무등록 선박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일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외국과의 어업협정 위반 관련 행정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7호)

○ 행정처분 : (현행) 1차 30일, 2차 45일, 3차 60일 → (개정) 1차 취소

나. 무등록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처분 강화(별표II.제2호가목제35호)

○ 행정처분 : (현행) 1차 경고, 2차 취소 → (개정) 1차 취소

다.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계류의 절차 규정 신설(제7조제1항)

○ 행정청과의 협의 회피 시 직접 계류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제1·3·7·8·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29. ~ 11. 9.) 예정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보하고”를 “알리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면허·허가·신고”를 “면허, 허가, 신고”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할 행정청의 협의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관할 행정청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기한 내에”를 “기한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통보한”을 “알린”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
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기한내에”를 “기한까지”로, “당초”를 “원래”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완료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통보하여야”를 “알려야”로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표의 제7호와 제35호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등의 기준					
		허가어업·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해기사면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 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4조 제49조 제58조	취소	—	—	취소	—	—
35.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가.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3조 제1항	취소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등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처분의 요구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정지처분에 대한 계류 절차를 적용할 때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정지·취소,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경고, 해기사 면허의 정지·취소 및 해기사에 대한 견책 요구 등의 기준과 절차를 <u>규정함으로써</u> 행정처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u>규정하여</u> ----- ----- -----.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u>통보하고</u> ,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u>알리고</u> ----- -----		

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신고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관리·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관할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어선등을 계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류하게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면허, 허가,
신고 -----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계류의 절차) ① -----

----- . 다만, 관할 행정청의 협의에도 처분의 상대방이 2회 이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관할 행정청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한까지

④ (생략)

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한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어업·양식업 또는 어획물운반업 정지처분에 따른 어선등의 계류 조치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행정청은 대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명령서를 송부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명령서를 발급한 후 그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
의 이행절차) ① ~ ③ (생략)

④ 관할 행정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한내에 시정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초 이행기한의 범위에서 그 이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을 연

④ (현행과 같음)

[illegible]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경고처분에 따른 시정명령
의 이행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

한까지

원래

장하려는 자는 그 기한이 끝나
기 3일 전까지 관할 행정청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을 이행한 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정완료 통보서에 증명
서류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
며, 관할 행정청은 어업감독 공
무원에게 그 이행 여부를 확인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생 략)

② 관할 행정청은 어업등행정처
분 및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에
대한 절차 이행의 결과를 제1항
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⑤ -----
----- 마친 --

-----.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알려
야 -----.